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복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 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자금의 예수·예탁 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기금의 관리·운용, 심의, 회계공무원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부터 제9조까지).

마.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1일까지로 정함(안 제10조).

바.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오산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년 8월 2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 명 :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복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8-351호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21일
발의의원 : 이상복 의원
찬성의원 : 장인수, 김영희, 김명철,
이성혁, 한은경 의원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 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자금의 예수·예탁 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라. 기금의 관리·운용, 심의, 회계공무원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마.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1일까지로 정함(안 제10조).
- 바.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재정법」 제9조의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제13조, 제16조, 제19조
 -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통합계정의 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예수·예탁하는 자금의 예수·예탁 약정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수·예탁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각각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예수·예탁의 약정기간 전 상환) 시장은 통합계정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예탁의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제6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등
3. 통합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4.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계정의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총 사업비 중 시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경비로서 제8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통합기금은 전년도 말 기준 통합기금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통합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기금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 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오산시 재정계획·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자금이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과 함께 폐지되는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오산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과 함께 폐지되는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예수금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함께 폐지되는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오산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②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③ 오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④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제5조제2항 중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⑤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⑥ 오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을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⑦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을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⑧ 오산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⑨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별첨1】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③ 통합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1. 통합기금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3. 그 밖에 통합기금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06년 10월 9일 조례 제899호
개정 2008년 1월 15일 조례 제949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1년 10월 24일 조례 제1156호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1년 12월 14일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4년 5월 2일 조례 제1362호
일부개정 2016년 4월 18일 조례 제147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중인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오산시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라 함은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해당연도의 예상지출소요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3. “시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이라 함은 시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오산시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4. 18>

1.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기금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4조(통합기금의 용도) ① 통합기금은 각 기금별로 조례에 정하는 목적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1.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 도시개발 시설의 조성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2.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시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용자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4. 통합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용자규모가 제1항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

야 한다. <신설 2014. 5. 2>

제4조의2(용자기준) ① 제4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의 자금을 용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용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용자를 위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

제5조(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의무)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오산시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각 기금의 통합기금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오산시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통합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은 오산시 재정계획·운영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1. 10. 24>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통합기금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4. 예탁금 및 용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5. 그 밖의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의2(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

제9조(회계공무원)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1. 12. 14>

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제10조(통합기금의 운용·관리)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되,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받고자 하는 때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결손의 보전) 통합기금의 운용시 손실금이 발생한 때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존속기간) ①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 운용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산시 재정계획·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6. 4. 1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금고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정기예탁한 경우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를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② 오산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시금고에 예치·관리”를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③ 오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금계좌를 설치하되,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를 “기금계좌를 설치하고,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④ 오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⑤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를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⑥ 오산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시금고에 예치·관리”를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⑦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를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부칙 <2008. 1. 15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24 조례 제1156호,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2항 중 “오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오산시 재정계획·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담당관·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⑨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2014. 5. 2 조례 제1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 18 조례 제14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예치한다”로 한다.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20년 3월 6일 조례 제177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3. 그 밖의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출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1.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총 사업비 중 시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
5.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경비로서 제6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②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기금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오산시 재정계획·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